오수정화시설 관리규정

제 정	1996. 3.
개 정	1999. 9.
개 정	2007. 11.
개 정	2013. 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, 정화조시설물을 관리,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업무관장)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총무처 관리과(2013.1.1.)에서 주관한다.

제4조 (시설관리와 책임) ①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진다.

②오수정화시설 관리자는 오수 및 정화조의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처리를 위한 계획, 운영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 (오수정화시설 관리) ①오수정화시설물의 관리자는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야 한다.

②오수정화시설 관리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 유지 보수 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(방법) ①오수정화시설관리자는 오수및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준용하는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오수정화시설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점검, 측정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.

③오수및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(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)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.

④오수정화시설물 관리자는 재해 및 고장발생 즉시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한다.

제7조 (위험표시) 오수정화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위험 표시 및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(망)을 설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. 9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. 1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